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41호 2022. 11. 14.(월)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5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6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6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6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6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6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복지계획 수립 ○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과 감독 등 ○ 길고양이의 관리 ○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사항과 동물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1.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5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 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및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
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
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
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및 사망 등 시행규칙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

죽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2. 피학대동물의 구조
3. 포획·구조된 동물의 공고·보호·관리
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두(頭)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공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기관·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해학대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 및 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우선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대 받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구청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기증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운영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물보호 단체, 민간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홍보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홍보·지원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1조(반려동물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

시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 동물친화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1. 제안이유 ○ 연수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교육 및 홍보(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제8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제10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1.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6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
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1.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6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아동스스로”를 “아동 스스로”로 한다.

제3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급식지원”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조사 등)”을 “(조사 실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 시행령 제36조제6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u>아동스스로</u>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u>아동 스스로</u> ----- -----.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 3. (생 략)	제3조(지원대상) <u>급식지원</u>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 등)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 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u>조사 실시</u>)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 명칭 변경 ○ 인용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경력단절예방’ 정의규정 신설 (제2조제3호)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 신설(제8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1.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62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
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로,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을 “지속적인
발전”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로, “여러 가지” 를 “제반”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력단절예방” 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으로, “수립하고” 를 “세우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으로, “제4조” 를 “제5조” 로, “경력

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로, “세우고”를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단체의 장”을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으로 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력단절여 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에 따라 <u>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활동 촉진</u>을 도모함으로써 <u>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경력단절여성등</u>”이란 <u>임신 · 출산 ·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 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 성</u>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u>경제활동 촉진</u>”이란 지방자치 단체 · 교육기관 · 기업 등이 <u>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u> 위하여 행하는 <u>여러 가지 활동을</u> 말한다. <신 설>	<u>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u>」-- <u>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 <u>지속적인 발전</u>----- -----. 제2조(정의) ----- -----. 1. ----- <u>혼인 · 임신 · 출산 ·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u> ----- ----- -----. 2. ----- ----- <u>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를 지원하기</u> ----- ----- <u>제반</u> ----- --. 3. “<u>경력단절예방</u>”이란 여성이 혼

3. · 4.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세우고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방법」----- 제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
-----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

② -----

--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
-----.

③ -----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
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을 위한 사업

<신 설>

5. (생 략)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
원사업

② (생 략)

<신 설>

제8조 (생 략)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1. 법 제13조제2항-----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삭 제>

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
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
른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범죄 정의(제2조) ○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제3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제4조)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명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규정,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제5조) ○ 스토킹범죄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1.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6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정보공개 강화 ○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자선정 기준 마련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 구체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1.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6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1.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3.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7.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8.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9.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1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1.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준과 자문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가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표자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은”을 “대표자는”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 결정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신청”을 “지원신청서”로, “현장조

사”를 “현장조사 및 서면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13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구청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소속 건설 및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3.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선정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의 적용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공사의 준공확인을 아직 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제8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별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제4조의2제1항 관련)

1. 위촉기준

공사 및 용역 부문
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산업기사 이상)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산업기사 이상)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2. 자문분야

구분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항목	①급배수 ②전기 ③가스 ④승강기 ⑤통신 ⑥도장 ⑦위생 ⑧방수 ⑨조경 ⑩ 기타	①청소 ②경비 ③기타
대상	(의무자문) 2억원 이상 (선택자문)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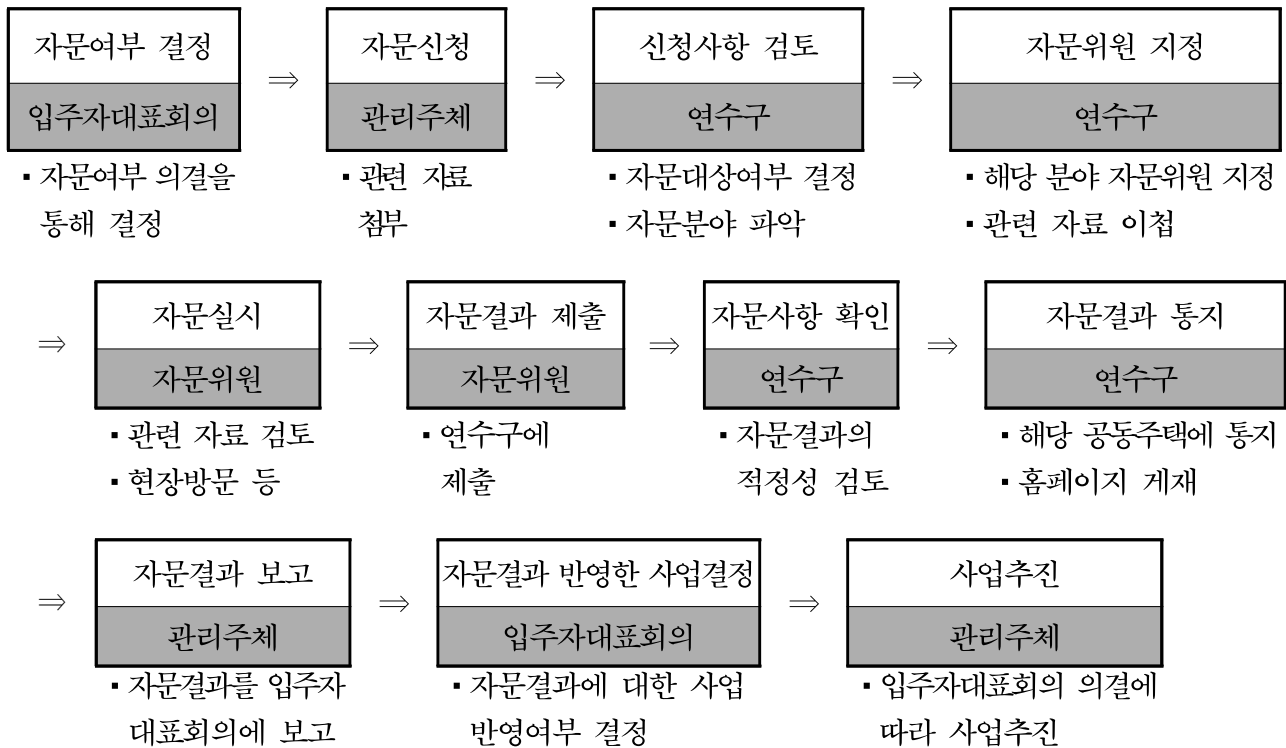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뒷면)

□ 자문절차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자 문 료 : 무료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연수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생 략)	제2조의2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 청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 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 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 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1. <삭제 2013.9.30.>	1.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 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 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 용시설물로 한정한다.	2.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가.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3.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나.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 기 사업
다.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 픽) 보수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 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 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라.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 물기 사업	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 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 전점검
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7.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8.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등)

바.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사.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아.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 등 전기료

자.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차. 공동주택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카.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전기료

9. 공동주택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1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1.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 (생략)

제5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와 같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가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제5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제4조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한다.

<신설>

<신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대표자는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결정 및 공개 등) ①
----- 따라 -----

신청서를 ----- 현장조사
및 서면심사----- 제8조
에 따른 -----
-----.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출산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생략)

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② -----
---- 16명 -----
----.

③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소속 건설 및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3.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 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⑦ ~ ⑧ (생략)

⑨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⑩ (생략)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사항

4. (생략)

<신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 해당 -----
----- 해당 -----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점검)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대상자는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